

#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--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  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 
더불어민주당 금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최기찬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 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 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 
「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 
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 
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럼에도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로 인하여 공공시설에서조차 인간의 필수적인 기본권리 및 정당한 이용편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이에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증진 장비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